

 근사한 한끼 찰스숯불김밥	등록번호	20130100350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최초등록일	2013-05-09	www.no1gimbap.co.kr
	최종등록일	2024-09-05	niikeyun@gmail.com



정 보 공 개 서

(주) 찰스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찰스푸드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 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에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237]

TEL : 1688-1735 / FAX: 02-338-9403

[담당부서: 가맹사업본부 1688-173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및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직영점 목록 및 주소
2.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주) 찰스푸드	“찰스숯불김밥” 외 1 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237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전화번호 및 팩스
	2014.09.23	2015.03.06	문은희	TEL: 1688-1735 FAX: 02-338-9403
	법인 등록번호	284911-0130705	사업자 등록번호	326-87-00029

- 당사는 현재 [찰스숯불김밥]의 [키토분식]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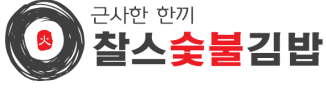
관 계	이 름	사 용 브 랜 드	주 소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번 호
사용인 (대표)	대표 문은희	“찰스숯불김밥” 외 1 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237	
	이사 손성훈		문은희	T.: 1688-1735 F.: 02-338-940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서 직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찰스숏불김밥	-
상 호	찰스숏불김밥 OO 점	
상표(서비스표)	 찰스숏불김밥	출원준비중
그 밖의 영업표지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현황 요약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2021 년	431,830	540,912	-109,082	1,317,812	-51,432	-39,354
2022 년	509,468	542,772	-33,304	1,586,090	39,337	-75,778
2023 년	585,629	512,895	72,733	2,020,645	94,613	106,038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체명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문은희	대표	2014.9. ~현재	(주)찰스푸드	회사운영 총괄
비관련임원	손성훈	이사	2014.9. ~현재	(주)찰스푸드	-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찰스숏볼김밥』 가맹사업 외의 동일 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가맹 본부	(주)찰스 푸드	키토분식	20230986	2022.08 ~ 현재	분식(토픽김밥)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의 『찰스숏불김밥』가맹사업과 관련한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은 현재 출원 준비중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의 서비스표는 현재 출원 준비중으로 당사의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는 2013년 2월 21일 『찰스숯불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가맹사업 연혁

당사의 『찰스숯불김밥』에 대한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찰스푸드	찰스숯불김밥	문은희	2013.02.21 ~ 2015.03.0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237
(주) 마들락	찰스숯불김밥	문은희	2015.03.06~ 2016.08.2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길 17, 301호(합정동, 세진빌딩)
(주)찰스푸드	찰스숯불김밥	문은희	2016.08.23 ~ 2018.02.2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길 17, 301호(합정동, 세진빌딩)
(주)찰스푸드	찰스숯불김밥	문은희	2018.02.23 ~ 2019.07.25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말로 29, 2층(연희동)
(주)찰스푸드	찰스숯불김밥	문은희	2019.07.26 ~ 현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237

3. 가맹사업 업종

『찰스숯불김밥』에 대한 가맹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찰스숯불김밥	분식	김밥

4. 최근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찰스숏불김밥』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4	13	1	8	8	0	6	6	0
서울	6	5	1	3	3	-	3	3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6	6	-	4	4	-	2	2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2	2	-	1	1	-	1	1	-
제주	-	-	-	-	-	-	-	-	-

5. 최근 3 개년도 말 ‘『찰스숏불김밥』’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 직전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7	0	0	4	0	13

2022	13	0	0	5	1	8
2023	8	0	0	2	0	6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찰스숏불김밥』 가맹사업 외 현재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 본부	영업 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단위: 개)		
				21.12.31.	22.12.31.	23.12.31.
(주)찰스 푸드	키토분식	20230986	분식 (토핑김밥)	0/0	2/2	3/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지역별 연간평균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찰스숏불김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가맹점 수	2023년 연평균 매출액(단위: 천원, VAT미포함)						비고
		연평균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매출액		
		연평균	3.3㎡당	상한	3.3㎡당	하한	3.3㎡당	
전체	6	170,378	11,111	266,732	21,920	83,374	5,391	산출:6개
서울	3	-	-	-	-	-	-	5곳미만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2	-	-	-	-	-	-	5곳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1	-	-	-	-	-	-	5곳미만
제주	-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 (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가맹점 운영개월수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와 매출액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는 해당 자료를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추정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3 항·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찰스숏불김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 개	1,520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현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맹지역본부와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광고 및 판촉비 내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온라인등	2023.1~12	0	0	-	광고선전비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 또는 국민은행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합정동지점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3-4	1588-5000 02-337-3453
국민은행	합정역지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1588-9999
중소기업은행	서교동지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59	1566-2566 02-335-566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금액을 당사에서 교부한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맹계약 후 다음날까지 예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우리은행 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에 방문하시어 예치가맹금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은행장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우리은행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찰스숏불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6,600	계약 체결 후 익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후 익일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전 교육비
[합 계]	₩9,900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 1,000	계약 체결 후 3 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 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 배 이내

* 계약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예치가맹금액
합계	₩10,900
가맹비	₩6,600
교육비	₩3,300
개정행사비	없 음
보증금	₩1,0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금전 지급방법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판, 인테리어 등 기타 비용 (기준: 39㎡ (12평) /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 대상	총 금 액	3.3 ㎡당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총 계]	-	[45,100]	[3,758]	-	-
간판	업체 자율	3,960	돌출, 인허가 별도	-1차(60%): 인테리어 시작일 -2차(40%): 납품 3일전	간판 제작 전 계약 해지시
인테리어 (실내)	업체 자율	22,440	[1,870]	-계약금: 계약일(30%) -중도금: 공사 5일째(40%) -잔금: 영업 개시3일전(30%)	실내측정 전 계약해 지시
주방 기기	업체 자율	8,580	[715] 식기세척기 별도	-1차(60%): 인테리어 시작일 -2차(40%): 납품 3일전	물품발주 전계약해 지시
주방 용품	업체 자율	4,070	-	-1차(60%): 인테리어 시작일 -2차(40%): 납품 3일전	물품발주 전계약해 지시
탁자, 의자	업체 자율	3,850	불박이의자 포함	-1차(60%): 인테리어 시작일 -2차(40%): 납품 3일전	물품발주 전계약해 지시
기타 (오픈 준비)	가맹본부	2,200	인쇄, 홍보물 등	-1차(60%): 인테리어 시작일 -2차(40%): 납품 3일전	물품발주 전계약해 지시
POS	업체 자율	무상지원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간판은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기기는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기본설비가 필요하므로 상기 기재된 평당 단가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장규모가 39 ㎡(12 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3 ㎡ 당 인테리어 가격은 187만원(부가세포함)이며, 매장규모 및 물가변동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금 지급 기한은 공사 상황과 오픈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인테리어, 간판 시공시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귀하는 당사가 파견하는 직원의 감리(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며, 이의 비용으로 당사에 3.3㎡당 33만원(부가세포함)의 검수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POS 및 주방기기류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당사(협력업체포함)에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철거, 냉난방, 전기증설, 가스, 화장실, 외부공사, 외부닥트, 어닝, 소방설비, 스프링쿨러, 온수기, 분전함, 전기제품, 초도상품,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정화조공사, 전면유리 및 샷시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은 별도로 실비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초도물품과 관련하여 초도 발주물량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및 이미 진행된 공사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내	100 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후 10 일 이내	300 만원
계약 체결 후 10 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500 만원
계약체결후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비용 등	실제 발생비용 전액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연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에 해당자가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찰스숏볼김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9)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금액	지급	반환조건	반환될	비고
----	----	----	----	------	-----	----

	대상		기한		수 없는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220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 경과분	매 월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업체 자율 (요청시 본부 지정업체)	개별사안에 따라 당사와 협의.	간판교체 2 주일전	간판 제작전 취소	간판교체후 반환되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점포환경 개선	업체자율선 정에 따른 시공업체	가맹본부분담비 용을 제외한 나 머지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정 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기본교육 무료 특수상황은 실비청구	교육실시 7 일전	교육실시 1 일전 취소	교육실시후 반환되지 않음	수시교육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교육실시 7 일전	교육 실시 1 일전 취소	교육실시후 반환되지 않음	보수 및 특별교육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실시 후 반환불가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	-	금전지급 의 무의 지급기 한 경과시 부담.

* 리스료, 재고관리비용, 회계처리비용, 영업지역보장금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광고분담비에 관하여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중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재재고수량조사,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부정기	문의 1688-1735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 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 년 1 회이상 및 요청시	문의 1688-1735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양도인)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의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찰스숯불김밥』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가)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찰스숯불김밥』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매뉴얼,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서류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품의 특성상 유통기간 및 부패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찰스숏불김밥』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별첨 2. 주요품목” 참조요망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찰스숏불김밥』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1)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찰스숏불갈비』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주선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찰스숏불갈비』가맹사업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의해 거래를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김밥류: 불고추장김밥, 크림치즈김밥, 멸치견과류김밥, 치킨샐러드김밥, 참치김밥, 참치샐러드김밥, 더블치즈김밥, 참치김밥, 야채찰스김밥, 진짜불고기김밥, 매운고추멸치김밥, 진미채김밥, 크림치즈호두김밥, 묵은지김밥, 묵은지참치김밥, 와사비참치김밥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후 가맹점 운영권 제한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 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떡볶이 및 수제돈가스류: 치즈불떡볶이, 치즈라볶이, 치즈쫄볶이,			

등심돈가스, 치즈돈가스			
분식류: 쫄면, 냉쫄면, 생면비빔국수, (냉)생면김치말이국수, (온)생면김치오뎅국수, 오뎅탕, 떡만두국, 떡국, 떡라면, 치즈라면, 만두라면, 라면, 짬뽕국수, 진짜불고기볶음밥			
식사료 및 주먹밥류: 김치베이컨볶음밥, 해물볶음밥, 숯불주먹밥, 불고추장주먹밥, 멸치호두주먹밥, 치킨샐러드주먹밥, 참치샐러드주먹밥, 김치베이컨주먹밥, 참치주먹밥, 진짜불고기주먹밥, 짬뽕밥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에서 공급하는 품목은 품질의 통일성, 안정성 등을 유지하고, 신메뉴 개발등 당사의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찰스숯불김밥의 타 가맹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왼쪽에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경고 2 회 위반: 서면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시정 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 회 위반: 계약해지	제외
-------------------	--	--	--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숯불김밥	4,500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 스통지, 홈페이지 공지 등	2024. 4 월 기준 (계절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매운숯불김밥	4,700		
불고추장김밥	4,500		
크림치즈김밥	4,500		
멸치견과류김밥	4,300		
치킨샐러드김밥	4,300		
참치김밥	3,800		
참치샐러드김밥	4,200		
샐러드김밥	3,700		
더블치즈김밥	3,500		
참치김밥	3,800		
야채찰스김밥	2,900		
진짜불고기김밥	4,800		
매운고추멸치김밥	4,000		
진미채김밥	4,200		
크림치즈호두김밥	4,500		
묵은지김밥	3,000		
묵은지참치김밥	4,000		
와사비참치김밥	3,800		

치즈불떡볶이	5,900		
치즈라볶이	6,200		
치즈쫄볶이	6,500		
쫄면	6,000		
냉쫄면	6,700		
생면비빔국수	5,500		
(냉)생면김치말이국수	6,800		
(온)생면김치오뎅국수	6,800		
오뎅탕	6,700		
떡만두국	6,500		
떡국	6,000		
떡라면	4,000		
치즈라면	4,000		
만두라면	4,000		
라면	3,500		
짬뽕국수	6,900		
진짜불고기볶음밥	7,500		
등심돈가스	7,000		
치즈돈가스	8,000		
김치베이컨볶음밥	6,500		
해물볶음밥	6,500		
숯불주먹밥	3,000		
불고추장주먹밥	3,200		
멸치호두주먹밥	3,500		
치킨샐러드주먹밥	3,000		
참치샐러드주먹밥	2,800		
김치베이컨주먹밥	3,000		
참치주먹밥	2,700		
매운멸치주먹밥	3,300		
진짜불고기주먹밥	3,700		

짬뽕밥	6,900		
-----	-------	--	--

4. 영업지역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찰스숏불김밥과 동일한 업종 (김밥류, 분식류)	1. 찰스숏불김밥 2. 키토분식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동선거리 300m 의 범위를 원칙으로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업지역내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종합병원,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아울렛 등의 대형건물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봅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조정 통보→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합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찰스숏불김밥』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찰스숏불갈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해지

1) 가맹계약의 기간

『찰스숏불김밥』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갱신 시에는 1 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거 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 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단, 갱신비 발생)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 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귀하가 정보공개서 “IV-3-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에 따른 갱신비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갱신비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1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후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3 항	25 조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및

갱신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7 조 1 항	31 조 1 항 2 호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 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 조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1 항 및 2 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의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한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부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3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15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 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1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2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1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 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1688-1735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가능	모든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서면으로 승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파상속인 사전에 미리 본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절차는 생략됨
대리행사	불가능	-	-	-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위탁 승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토(위탁자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중에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찰스숏불김밥』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제한지역	경업허가절차
계약기간 중	『찰스숏불김밥』과 동일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하 는 김밥 및 분식전문점	국내 전지역	해당사항없음 (문의 1688-173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찰스숏불김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12시간) 영업	월 26일 이상	문의: 1688-173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지역특성 및 개인적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 영업일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 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 회/분기	본사 점포 운영팀	별첨3. 체크리 스트 참조
친절도	담당자 매장 방문 → 영업점검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 회/분기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 회/분기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찰스숏불김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 담 비 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측 50%(1/N)	행사 계획 공 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 정 → 광고비 납부	1. 대중매체광 고 등 광고에 따라 필요시 분담 절차는 변동될 수 있 음. 2. 가맹점사 업자비용부담 시는 50%이 상 동의시 시 행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가맹점사업자측 25%(1/N)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판촉 행사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상기와 동일	가맹점사업자 70%이상 동 의시 또는 동 의점주 대상 시행
	개별행사	가맹점 100%부담		해당없음	가맹점단독 판촉행사

- *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본사의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후 3 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 해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갑”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10,000,000원 (₩10,000,000원)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이 제 23 조(자점매입)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10,000,000 원 (₩10,000,000 원)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종료시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급격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 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갑”이 지불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가맹점 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 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중 영업 개시 이전 부담금전 지급 방법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688-1735)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	
1 차 상담	찰스숯불김밥소개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개설금액 등	D-45	
상권분석	가맹희망자 의사결정 후 입지시장 분석 및 입지 선정 업무 지원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최종 개설 협의	D-30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보관 - 우리은행 또는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8	
인테리어공사 및 인허가	- 인테리어도면협의 및공사 실시 - 소방필증,가스필증,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신용카드 가맹점 신청, 전화/인터넷신청 설치	D-27~2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6~2 (3 일)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2~1	
오픈	- 오픈행사 - 영업 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 개선 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 년으로 한다.)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 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가맹본부 부담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찰스숏불김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 또는 알선 등은 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 가맹금의 분납등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찰스숯불김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조리교육	메뉴 교육, 주방관리 등	실습 및 이론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매장 오픈 전	필수 교육
서비스 및 운영 교육	회사소개, 접객방법, 마인드 교육, 위생교육, 매장운영 소양교육 등	실습 및 이론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매장 오픈 전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찰스숯불김밥』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교육시간	비고
수시교육	사업운영에 필요한 의견수렴 통지사항, 신메뉴 교육 등	실습교육	1 일(3~4h)	신메뉴 출시 및 필요시
보수 및 특별교육	1 년경과에 따른 보수교육 및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강의교육	1 일(3~4h)	가맹점주 요청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찰스숯불김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10 일	330 만원 (부가세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1 일 6 시간 기준)
수시 교육	1 일	실기 재료비 등 실비 발생시 청구	신메뉴 출시에 따른 필수교육
보수 및 특별 교육	3 일	실비 청구	보수교육 및 가맹점요청시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주방실장 등)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 목록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평균 영업기간 (단위: 년, 개월)
2023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023	해당없음	-

별첨 1. 재무 현황

2023 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2 년~2021 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강제/권장 품목 및 주요품목 공급가격

1. 강제/권장 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주요품목 공급가격

(단위: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 3.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2023년 12월말 찰스숏불김밥 가맹점목록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1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확인서 -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 수령 자필확인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제공일시	20 년 월 일 시	제공장소	
제공 받은 사실	<u>“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u> [하단 자필 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 . .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 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수령 자필확인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제공일시	20 년 월 일 시	제공장소	
제공 받은 사실	<u>“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u> [하단 자필 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 . .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 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인) 또는 서명